■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[별지 제2호서식]

제 2021 - 1 호

행정대집행 영장

성명 : 미 상
주소 : 불 명

2021년 6월 23일, 귀하 소유의 불법 어구(각망 등) 및 시설물을 2021년 7월 7일까지 철거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,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구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「행정대집행법」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.

※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「행정심판법」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- 아 래 -

대집행 일시	행정대집행 책임자			행정대집행 비용(추산액)
	소속	직위(직급)	성명	
2021년 7월 8일 ~ 철거완료시까지	사 하 구 경제진흥과	수산자원계장 (해양수산6급)	이재헌	집행 후 산정

2021 년 6 월 23 일

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

사하구 청장인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